**화인부락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화인부락으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①화인부락은 숭실대학교 대표 미술 동아리이며, 순수미술 창작 및 정기 전시를 통해 순수미술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1. 학생회관 322호를 동아리방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총무, 봉사부, 홍보부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기본 6개월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임원진은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 차기 임원진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.

② 임원진 임기가 끝나기 전 차기 임원진 지원자를 받는다.

③ 임원진의 선출은 집행부 회의에서 임원진 및 집행부의 상의 하에 결정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부회장은 보조업무 및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.

③ 임원진은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돕는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① 집행부는 임원진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되며, 집행부원은 필요에 의해 임원진이 선임한다.

② 집행부의 의결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집행부 회의는 월 1회 이상 진행한다. (필요에 의해 상시 진행)

② 집행부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의록을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① 화인부락에서 정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임원진의 승인을 받은 학생

② 화인부락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동아리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
④ 동아리 회원은 화인부락에서 공지한 기본규칙을 따라야한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.

1. 동아리 지원서 작성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② 본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을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.

1. 폭력, 욕설 등의 행동으로 동아리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
2. 타당한 이유없이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
3. 아무런 의사 표현없이 동아리 공지방을 나가는 경우
4. 이외 임원진이 판단하기에 동아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

③ 동아리 탈퇴 시 납입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① 화인부락은 지정된 시간없이 상시 동아리방을 개방하여 모든 부원이 미술작업을 할 수 있다.

②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소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.

1. 소모임 개최를 원하는 부원은 임원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소모임의 규칙은 임원진 입회 하에 소모임장이 정한다.
3. 화인부락의 소모임은 화인부락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 2조 [총회]**

① 총회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임원진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② 임원진의 판단 하에 임원진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집행부가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1. 회비는 집행부 회의에서 정하며, 23년도 상반기는 기존부원 20,000원, 신입부원 30,000원으로 한다.

② 모든 지출은 회계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① 회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동아리방**

**제 1조 [물품]**

① 동아리방의 모든 미술용품은 공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, 회원들은 재료들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.

② 동아리방 내 사물함의 사용 기간은 1학기이며, 주인은 선착순으로 정한다.

③ 사물함 사용기간이 끝난 후 개인 물품을 정리하지 않을 시 1주일의 보관 기간을 거친 후 폐기 처분한다.

④ 동아리방 내 개인 물품을 비치할 경우, 본인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한다. 이를 어길 시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 회원에게 있다.

**제 2조 [비밀번호]**

① 비밀번호는 임원진의 상의 하에 결정한다.

②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임원진들은 동아리방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.

③ 본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에게 동아리방의 비밀번호를 유출할 경우, 동아리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.

**제 3조 [쓰레기통]**

① 동아리방 내의 쓰레기통은 미술용품 및 일반 쓰레기의 처리만을 위한 용도이다.

② 음식물 쓰레기를 동아리방 내 쓰레기통에 버렸을 경우 경고 조치하며,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동아리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.

**제 4조 [출입]**

① 동아리방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.

② 동아리 부원이 외부인을 출입시켰을 경우, 해당 부원의 동아리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.

**제 8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0.01.29]

개정 1판 [2020.03.03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

**제 3조 [이외 사항]**

①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.